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응급구조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근거 마련〉

■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304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응급구조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근거 마련 (안 제37조제2항·제3항 신설 등)	2

I. 개요

1.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6304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대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1. 23.

(3) 회 부 일 : 2026. 1. 2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이 응급구조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데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응급구조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근거 마련
(안 제37조제2항·제3항 신설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6조의2(응급구조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응급구조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증 교부 신청일 기준으로 <u>제37조</u> 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의2(응급구조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 ----- ----- ----- ----- -----. ----- <u>제37조</u> <u>제1항</u> ----- -----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7조(<u>결격사유</u>) (생략)	제37조(<u>결격사유 등</u>)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신 설>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 3의2. (생략)

4. 제3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 7. (생략)

② ~ ⑤ (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 대상기관 및 제공 방법 등 개인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 ① -----

-----.

1. ~ 3의2. (현행과 같음)

4. 제37조제1항-----

5. ~ 7.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재 응급구조사 결격사유는 합격자 본인 제출서류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근거는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및 하위법령에 마련되어 시행 중인데,

「응급의료법」 제37조제3호·제4호의 결격사유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결격사유 조회로 확인할 수 있지만,

「응급의료법」 제37조제1호·제2호의 결격사유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해당여부에 관련된 정보(이하 “정신질환등 관련 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조회되지 않는 결격사유 정보임¹⁾.

< 응급구조사 결격사유 및 확인방법 >

결격사유	근거법률 (「응급의료법」)	확인방법 (「응급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응급구조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법 제37조제1호	의사 진단서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호)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법 제37조제2호	의사 진단서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호)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법 제37조제3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제2호)

1) 「응급의료법」 제37조제1호·제2호의 결격사유는 의사 진단서를 통하여 확인(응급구조사 시험 합격자 제출)

결격사유	근거법률 (「응급의료법」)	확인방법 (「응급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응급의료법」, 「형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법 제37조제4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제2호)

주: 「형법」의 경우 제233조, 제234조, 제268조(의료과실만 해당), 제269조, 제2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7조제1항 위반만 해당(「응급의료법」 제37조제4호나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급구조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응급구조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가. 이 법
 - 나.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8조(의료과실만 해당한다), 제269조, 제2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7조제1항
 - 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보건복지부장관(제23조의3 및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자격인정 및 결격사유 확인 등에 관한 사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자격증의 교부 등)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응급구조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2. 법 제3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료의 수집을 보다 원활히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 시행 시 개인의 자료 제출 없이도 기관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게 되어, 절차의 간소화와 결격사유 확인의 실효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정신질환등 관련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²⁾에서 규정하는 민감정보로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신질환등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 간 직접 공유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것의 적절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동 개정안 외에 유사한 취지³⁾의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어⁴⁾ 논의 시 고려될 수 있을 것임.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

3) 대상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또는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4) < 기타 발의법안 예시(강대식의원 대표발의 7건) >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2214156호, 발의일 2025.11.12)	항공안전법 개정안(2214157호, 발의일 2025.11.12)
모자보건법 개정안(2214681호, 발의일 2025.11.28)	노인복지법 개정안(2214682호, 발의일 2025.11.28)
영유아보육법 개정안(2214693호, 발의일 2025.11.28)	국민영양관리법 개정안(2216302호, 발의일 2026.01.23)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2216303호, 발의일 2026.01.23)	

다. 관계기관 의견

- ☐ (보건복지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응급구조사 자격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자격 취득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결격사유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됨.
-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의견 없음.

문 의 처
02)6788-5509

【참고】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관련 입법례
-------------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 제공 가사근로자의 결격사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사근로자에게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3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가 제12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사근로자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1. 삭제<2021.7.20.>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7.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8. 제38조제1항제2호·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제39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제39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③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하 "개업공인중개사등"이라 한다)이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조종면허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종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4세 미만(제1급 조종면허의 경우에는 18세 미만)인 사람. 다만,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정신질환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독자 중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서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달아난 사람은 이를 위반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통보방법과 그 밖에 개인정보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구조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 중독자
4. 이 법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가. 이 법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죄
나. 「형법」 제268조(수상에서의 안전관리 및 인명구조 업무와 관련한 과실만 해당한다)의 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②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수상구조사의 결격사유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통보방법 및 그 밖에 개인정보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20세 미만인 자. 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을 소지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형법」 제114조의 죄
 - 나. 「형법」 제257조제1항·제2항, 제260조 및 제261조의 죄
 -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6의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죄(이하 "음주운전 등"이라 한다)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 또는 제46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46조(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① 허가관청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제12조제2항의 경우에는 소지할 사람으로 특정된 사람을 말하고, 같은 조 제3항의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또는 화약류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받은 산업용총·가스발사총·마취총, 폭발물분쇄용 총포,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의 대수의 일부에 대한 허가를 취소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46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통보) ①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을 위하여 결격사유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통보방법과 그 밖에 개인정보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